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12.>
[別紙第4号書式] <改正 2023年12月12日>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通信販売業変更届出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3일 処理期間 3日
신고인 届出人	법인명(상호) 法人名 (商号)	신고번호 届出番号
	소재지 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대표자의 성명 代表者の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전자우편주소 電子メールアドレス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인터넷도메인 이름 ドメイン名	호스트서버 소재지 ホストサーバーの所在地
	신고 사항 変更事項	변경 전 変更前
변경 후 変更後		
변경 사유 変更理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電子商取引等における消費者保護に関する法律」第12条第2項、同法施行令第16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9条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届出を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신고인
届出人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上記の届出人の代表者と届出人が異なる場合のみ記入します。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取引委員会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

귀하
殿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届出人（代表者）の 添付書類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変更事項を証明する書類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通信販売業届出済証（届出証の記載事項が変更された場合のみ添付）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届出済証を紛失・毀損した場合は、以下にその理由を記載して届出済証を添付しないこともできます。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届出済証の紛失・毀損の理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確認事項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法人登記事項証明書（法人の場合のみ該当）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事業者登録証（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ない場合は、事業者登録証の写しを提出してくださ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上記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のうち第2号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は、届出人が関連書類を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고인(대표자)
届出人（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